

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4월 3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0일, 포항시장
- 2)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- 3) 상정일자
 -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배성규 체육산업과장)

1) 개정이유

-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- (현행) 2026년 6월 30일
 - (개정) 2031년 6월 30일

3)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그 기한을 2031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